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4

제출일자 : 2005. 8.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거주에 관한 증명은 발급근거가 폐지되었기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관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조항 삭제 (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수수료의 경감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감면대상에 대하여 수수료 경감비율 규정

2) 경감비율 : 50%

3) 경감대상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거주에 관한 증명 삭제 (안 별표의 1)

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개정 (안 별표의 3)

1)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에 대한 수수료규정 신설

- 2) 수수료 산정기준의 세분화(기본단위요금+초과요금)
- 3)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기준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종로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증명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증명”을 “제 증명”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 증명.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별표의 1중 거주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고, 별표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9종)

종 목	단 위	수수료 액	비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초과 시 1컷마다	100원	
(4)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5) 녹음테이프 청취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60분 기준)	1,500원	
(나)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700원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60분 기준)	1,500원	
(나)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700원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60분 기준)	3,500원	
(나)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2,000원	
(8)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나.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3)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1편	1,500원	
	30분초과시10분마다	500원	
(4)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1편	1,500원	
	30분초과시10분마다	500원	
(5) 영화필름 시청	1편	1,500원	
	30분초과시10분마다	500원	
(6)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7)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2) 카드·도면 등 사본(1매 기준)	A3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권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나) 여러 권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권마다	3,000원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편이 1물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물마다	5,000원	
(나) 여러 편이 1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원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필름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나) 필름 복제	1롤마다	1,000원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필름의 인화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나)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 액	비고
라.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나)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가) 카드·도면의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나) 카드·도면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3)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4)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5) 영화필름 복제(매체비용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6)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건(1MB 기준) 1회	200원	
	1MB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28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종로구</u> 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 ----- <u>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u> -----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증명에 대하여는</u>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u>경우에는</u> -----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u>증명</u>	1. ----- ----- <u>제 증명</u>
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u>장애인복지법</u>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u>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u>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u>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u>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u>장애인복지법</u>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 ----- 「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

현행	개정안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u>별표 제1호의 제 증명 및 주민등록표열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다만,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u> 3. <u>문화재보호법시행령</u>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생략) 〈신설〉	----- 제 증명, 다만, 구----- ----- -----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4종)

종	목	단	위	수수료
가. 원본의 열람·시청	(5) 녹음테이프 시청			
나. 전자자료의 열람·시청	(3)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500원 500원
	<신설>			
	<신설>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2) 카드·도면 등 사본(1매기준)	A2 이상		실비
		A3		300원
라. 전자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 문서·대장의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신설>	B4이하		250원
	<신설>			
(나)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50원
(2)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가) 카드·도면의 사본	A3이상		300원
	(종이출력물 1매마다)	<신설>		
	<신설>	B4이하		250원
	<신설>			
(나) 카드·도면의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50원
(3)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10분마다			3,000원
	<신설>			
	<신설>			
	<신설>			
(4)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0분마다			5,000원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신설>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9종)

종	목	단	위	수수료
가. 원본의 열람·시청	(5) 녹음테이프 시청			
나.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3)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500원 500원
(4)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500원 500원
(5) 영화필름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500원 500원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2) 카드·도면 등 사본(1매기준)	<삭제>		
		A3이상		300원
라.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 문서·대장의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신설>	1매 초과마다		100원
	<신설>	B4이하		250원
	<신설>	1매 초과마다		50원
(나)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00원
(2)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가) 카드·도면의 사본	A3이상		300원
	(종이출력물)	1매 초과마다		100원
	<신설>	B4이하		250원
	<신설>	1매 초과마다		50원
(나) 카드·도면의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00원
(3)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매체비용 별도)	700MB 초과 시		2,500원
		350MB마다		
(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매체비용 별도)	700MB 초과 시		2,500원
		350MB마다		
(5) 영화필름 복제(매체비용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매체비용 별도)	700MB 초과 시		2,500원
		350MB마다		
(6)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매체비용 별도)	700MB 초과 시		2,500원
		350MB마다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건(1MB) 기준 1회			200원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신 · 구조문 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26종)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27종)		
종 목	단 위	수수료	종 목	단 위	수수료
가. <삭제 2003.5.19> (1) <삭제 2003.5.19>			가. <삭제 2003.5.19> (1) <삭제 2003.5.19>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	1건	500원	(1)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	1건	5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건	5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건	500원
(3)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1건	350원	(3)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1건	350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원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1개년/ 1호	5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1개년/ 1호	500원
(4)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또는 공동 주택 가격확인서 열람	1개년/ 1호	200원	(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 주택 가격확인서 열람	1개년/ 1호	200원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1건	500원	(1) 공장 등록 증명	1건	5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원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명칭 변경 증명	1건	350원	(1) 행정구역명칭 변경 증명	1건	350원
(2) 무적증명	1건	500원	(2) 무적증명	1건	500원
(3) <u>거주에 관한 증명</u>	1건	400원	<u><삭 제></u>		
(4)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4)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5)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1건	5,000원	(5)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1건	5,000원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한지처분(확정) 증명 또는 한지 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50원	(1) 한지처분(확정) 증명 또는 한지 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50원
(2) 경계명시측량(도로주거외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7,500원	(2) 경계명시측량(도로주거외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7,500원